연결납세와 개별납세간의 법인세부담액 차이에 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Changes in Tax Payments under Consolidated Tax Return

정재연(주연구자)**/ 신현걸(부연구자)***

Jae-Yeon Jeong / Hyun-Geol Shin

<목 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 론

<요 약>

본 연구는 연결납세시 연결집단의 연결법인세부담액과 개별납세시 지배·종속회사의 법인세부담액 합계간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연결납세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납세제도 도입시 결정하여야 할 요소들을 도출하고 각 도입방안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연결납세의 선택권을 연결집단에 부여하는 경우와 연결집단에 대하여 연결납세를 강제하는 경우로 구분한 후, 연결자회사의 지주비율(100% 또는 80% 이상), 연결자회사의 선택여부(강제포함 또는 결손금 발생 기업만 포함), 그리고 내부미실현손익 제거여부(제거 또는 미제거)에 따라 모두 8가지 분석유형을 구분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8가지 분석유형별로 연결납세시 세부담 감소액을 추정하고 차이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법인세부담액은 개별법인세부담액의 합계보다 적게 나타났는데, 연결집단이 연결납세를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연결법인세부담액은 개별법인세부담액 합계의 약 84% 수준으로 추정되었으며, 현재 과세당국이 고려하고 있는 2% 정도의 부가세(surtax)를 부과하더라도 연결집단별로 상당한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둘째, 연결집단에 연결납세와 개별납세를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범위, 결손금 발생 자회사의 선택 여부 및 내부미실현손익 제거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연결법인세부담액이 개별법인세부담액보다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결납세대상을 100% 지분소유 자회사로 한정하는 경우에 비해 80% 이상 지분소유 자회사로 확대하는 경우 연결법인세부담액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각 요소별 연결납세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색인어 : 연결납세제도, 법인세부담액, 지주비율, 부가세, 내부미실현손익

---

*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2004년도 교내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강원대학교 경영관광회계학부 전임강사. Tel(033)250-6177. jyjung@kangwon.ac.kr

***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Tel(02)2164-4293. shgcpa@hanmail.net

Ⅰ. 서 론

본 연구는 연결납세시 연결집단의 연결법인세부담액과 개별납세시 지배·종속회사의 법인세부담액 합계간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연결납세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결납세제도란 법률적으로는 독립된 실체이지만 경제적으로 단일의 실체로 볼 수 있는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즉, 기업집단 내 개별기업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고 내부미실현이익을 제거하는 등 기업집단을 하나의 법인으로 파악하여 과세하는 기업집단 과세제도이다.

연결납세제도는 1917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1960년대 후반 영국, 독일 및 네덜란드 등이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선진국에서는 이미 기업집단세제로서 보편화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2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이 허용되면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정부도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지만,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 부실기업의 퇴출을 촉진하고 있는 실정에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대기업의 부실자회사를 지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연결납세제도를 악용하여 조세회피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적극적이지 못했다(김진수·이준규, p.204, 2002). 그러나 일본이 2002년부터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것을 계기로 우리 정부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으며,[1] 2003년 8월에 개최된 제3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세제개편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연결납세제도를 2005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2]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침이 결정된 만큼 세수감소 및 조세회피수단으로서의 악용가능성 등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결납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와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문헌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연결납세대상 기업들의 실제 공시자료에 기초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연결자회사의 지주비율, 연결납세의 선택권 부여, 연결자회사의 연결납세대상 강제가입 여부 및 내부미실현손익의 처리 등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연결납세제도 도입으로 인한 세부담 감소규모를 추정함으로써 과세당국이 연결납세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결납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제Ⅲ장에서는 연결납세제도의 구체적인 도입을 위한 주요 결정요소들을 도출하고,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설계를 제시한다.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제

---

1) 2002년 9월 재정경제부는 연결납세제도가 지주회사 설립 활성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의 장점이 있으나 세수감소를 초래하고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도를 도입하려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뢰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조속한 시일 안에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조세뉴스 2002.9.5).

2) 2004년 7월에 개최된 공청회 및 조세연구원의 용역결과에 의해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시기가 2006년 이후로 연기되었다.

Ⅴ장에서는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의 검토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연결납세제도 관련 선행연구들은 크게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타당성 및 도입방안에 대한 문헌연구와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에 대한 실증연구로 나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의 주요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1.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타당성 및 도입방안에 대한 문헌연구

이우택(2001)의 연구에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모형을 구축하기 위하여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연결납세제도를 분석하고,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여 실행하는데 필요한 제반요인들을 분석·점검하였다. 연구결과에서 우리나라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과 실행에 필요한 조세외적 환경요인과 조세내적 기본요건들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고 단기간 내에 이러한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및 실행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

오윤택·정규언(2002)은 연결납세제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를 소개하고,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우택(2000)의 견해를 비판하고,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주장하였으며, 연결납세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김진수·이준규(2002)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형태의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와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를 각각 모색하였다. 손익대체형은 제도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연결납세의 목적에 이론적으로 부합하지 못하며, 소득통산형은 제도가 복잡하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기업집단의 경제적 일체성을 중시한다는 점, 손익상계, 결손공제, 내부미실현손익 이연 등을 포괄함으로써 손익대체형에 비해 이론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는 등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연구결과로 우리나라는 미국의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지만,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를 완벽하게 갖추려면 세법이 복잡해지고 행정비용 및 납세협력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므로 차선책으로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특히 2000년과 2001년에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한 기업의 실제자료를 이용하여 연결납세시 세액증감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된다.[3)]

김광윤(2002)은 이전의 연구와 달리 일본의 연결납세제도를 포함하여, 주요 선진 6개국의 연결납세제도를 비교·요약하고, 우리나라 연결납세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13개 항목에 걸쳐 제시하였다. 특이할 점은 기존의 연구와 달리 우리사주조합 및 임직원스톡옵션 지분을 고려하고 연결납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결자회사에 대한 지주비율을 독일 수준인 50% 초과로 규정할 것을 제언하였다.

김종철(2003)은 기존의 김종철·오윤택(2001)의 연구를 확장하여 일본을 포함한 주요 5

3) 연결납세의 범위를 지분비율 50% 이상, 80% 이상, 95% 이상 및 100%로 나누어 결손통산효과, 배당과세 배제효과, 세율누진효과를 각각 분석하였으며, 연결납세의 범위를 지분비율 100%로 할 경우 2000년에 5,169억원, 2001년에 2,698억원의 세수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국의 연결납세제도를 비교하고,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을 각 항목별로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제시하고, 상당한 세수의 감소에 대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에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세우대조치를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하여 Tax Base를 넓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결납세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세행정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 이외에도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한 연구로서 주요식(1997), 김찬섭(1999), 김문현·김란영(2000)의 연구 등이 있다.

2.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최기호(2001)는 현행 개별납세제도하에서 연결실체와 단일실체의 수평적 공평성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진단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연결실체는 단일실체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법인세부담률이 높았으며 법인세 부담률의 표준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개별납세제도 하에서 연결실체와 단일실체 간의 법인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증거로서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연결실체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대상이 아닌 기업을 단일실체로 분류한 후 개별기업의 손익계산서 및 연결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소득의 대용치로 이용하여 법인세부담률을 측정하고, 연결실체와 개별실체간의 법인세부담률의 차이를 분석하는 실증분석 방법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광재(2002)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연결집단의 지배회사 중 자료의 입수가 불가능하거나 법인세차감전순손실을 기록한 기업을 제외한 총 205개의 기업-연(firm-year) 표본을 구성하고, 통제집단으로 개별법인을 선정하여 대응표본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변동계수를 이용한 분석결과, 연결법인의 변동계수가 개별법인의 변동계수보다 높아서 연결법인의 수평적 과세공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지배회사(총 275개 표본)를 대상으로 개별납세와 연결납세의 과세공평성을 분석한 결과는 연결납세의 변동계수가 개별납세보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결납세가 과세공평을 제고할 수 있다는 최기호(2001)의 선행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다. 끝으로 총 152개 표본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의 연결집단이 현행 납세제도하에서도 이미 내부거래를 통하여 연결집단 전체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연결납세제도 도입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광재(2002)의 연구 역시 연결납세제도의 수평적 과세공평성 및 연결법인의 과세공평성을 분석하고, 연결집단의 내부거래의 존재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법인세부담률과 변동계수의 측정시 재무제표 수치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는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두었으며, 일부 실증연구들도 직접 연결법인세부담액을 추정하기 보다는 법인세부담률이나 변동계수를 이용한 연결납세의 조세공평성 제고 여부를 분석하는데 그쳤다. 또한, 연결법인세부담액을 추정한 김진수·이준규(2002)의 연구에서도 개별법인세 합계액에 연결

과세소득이 개별과세소득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연결법인세부담액을 추정하는데 머물렀다. 본 연구는 연결재무제표 및 주석자료 그리고 종속회사의 개별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될 경우 연결집단의 연결법인세부담액을 직접 추정하였으며, 이를 개별납세시 법인세부담액의 합계와 비교함으로써 연결납세제도 도입시 세부담의 감소효과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전의 연결납세제도 도입효과에 대한 실증연구와 차별화된다.

III. 연구설계

1. 연결납세제도 도입을 위한 결정요소의 도출

제Ⅱ장에서 검토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한 문헌연구들의 주장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선행연구들의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의 비교[4)]

요 소	이우택 (2001)	오윤택·정규언 (2002)	김진수·이준규 (2002)	김광윤 (2002)	김종철 (2003)
유 형	소득통산형	소득통산형	소득통산형 (통합형)	소득통산형 (통합형)	소득통산형
지주비율	100%	80% 이상	100%	50% 초과	100%
연결납세 적용	임의선택	임의선택	임의선택	임의선택	임의선택
자회사의 가입여부	선택가입	모든 자회사의 강제가입	모든 자회사의 강제가입	선택가입	모든 자회사의 강제가입
제도의 계속성	필요	필요	필요	필요	필요
사업연도 통일	필요	–	불필요	필요	필요
회계기준 통일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
연결납세 전 자회사의 이월결손금	미국의 SRLY원칙과 같은 기준 제정	개별소득에서만 공제	개별소득에서만 공제	개별소득에서만 공제	–
내부미실현손익의 처리	매도자 인식 후 이연	–	매도자 인식 후 이연(재고자산 포함)	재고자산과 고정자산의 미실현이익 제거	매도자 인식 후 이연(고정자산의 미실현 이익만 제거)
연결세액의 배분기준	–	일정한 배분기준을 정하고 선택허용	배분방법을 연결집단이 선택(주주총회의 승인)	개별소득금액 기준(단일기준)	일정한 배분기준을 정하고 선택을 허용

4) 정재연(2003)의 연구에서 인용하였다.

가. 연결납세제도의 유형

선행연구에서는 제도가 다소 복잡해진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연결납세제도의 목적에 이론적으로 부합되며, 조세의 공평성 및 중립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있다는 장점을 들어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를 채택할 것을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에 기초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나. 연결범위(연결자회사에 대한 지주비율)의 결정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각국의 연결자회사의 범위는 국가마다 다르다. 일본·네덜란드(운영상은 99% 이상)·호주·핀란드 등은 지주비율 100% 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95% 이상(실질적으로는 100%), 미국은 80% 이상, 영국은 75% 이상, 독일은 50% 초과 등으로서 국가마다 각기 다른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연결자회사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지주비율 기준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수행된 선행연구들도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우택(2001), 김진수·이준규(2002) 및 김종철(2003)의 연구에서는 소수지분에 관련된 문제를 회피할 수 있으며, 도입초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지주비율 100% 기준을 적용하되 점진적으로 지주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오윤택·정규언(2001)의 연구에서는 연결납세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비율 판정시 적용되는 지분비율인 80% 이상 보유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김광윤(2002)의 연구에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와 일치시킴으로써 연결회계제도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어 독일 수준인 50% 초과 보유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연결자회사에 대한 지주비율은 연결납세제도의 기본적인 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최근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100% 지주비율을 채택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모기업과 자회사간의 100% 지분보유 회사의 경우에만 연결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재정경제부가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조세일보 2003. 11.27). 그러나,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고려한다면 지주비율 100% 기준은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주비율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지주비율 결정을 위한 사전분석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배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인 경우와 80%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과세당국이 지주비율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5]

다. 연결납세의 선택 및 연결납세 계속적용의 강제성

연결집단이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결납세와 개별납세의 선택을 허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결납세제도를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일단 연결납세를 선택한 연결집단이 임의로 연결납세를 중단할 수 없도록 강제하여야 한다는 것이 선행연구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주장과 같이 연결납세의 선택권을 연결집단에 부여하는 경우와 연결집단에 대하여 연결납세를 강제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연결납세의 선택권을 연결집단에 부여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로 인하여 연결법인세부담액이 증가하는 연결집단은 연결납세를 선택하지 아니할 것이므로 연결법인세부담액과 개별법인세부

5) 김광윤(2002)이 주장한 지주비율 50% 초과 기준은 현실적으로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담액의 합계를 동일한 금액으로 보고 실증분석을 수행하기로 한다.

라. 연결자회사의 강제가입 여부

오윤택·정규언(2001), 김진수·이준규(2002), 김종철(2003) 등은 연결집단의 일체성을 강조하는 연결납세의 기본원리에 합치되며, 연결자회사의 선택을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결납세의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자회사를 강제로 연결납세대상에 가입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이우택(2001)은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자회사를 연결납세대상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더라도 지주비율의 조정을 통하여 연결대상의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연결자회사의 강제가입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광윤(2002)도 미국,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연결자회사의 가입여부에 대하여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선택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결자회사의 강제가입 여부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주장이 대립되고 있으므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때 지배회사가 연결납세기준(즉, 지주비율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자회사를 강제로 연결납세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특정 자회사만 선택적으로 연결납세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일 특정 자회사만을 선택적으로 연결납세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지배회사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연결자회사의 범위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지배회사가 연결자회사의 범위를 결정할 때 고려할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며, 결손금의 통산효과가 연결법인세부담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모든 자회사를 강제로 연결납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와 당기에 결손금이 발생한 자회사만을 연결납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로 구분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마. 내부미실현손익의 처리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하에서는 연결집단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 과세하므로 연결집단내 기업간의 내부거래 인하여 발생한 미실현손익을 제거(즉, 과세이연)하여야 한다. 이미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재고자산과 고정자산의 미실현손익을 모두 제거하는 경우(미국)도 있고 고정자산의 미실현손익만 제거하는 경우(일본·프랑스)도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내부미실현손익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으나, 김종철(2003)의 연구에서는 고정자산의 미실현이익만을 제거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고, 김진수·이준규(2002), 김광윤(2002)의 연구에서는 재고자산과 고정자산의 미실현이익을 모두 제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내부미실현손익의 제거범위에 있어서는 견해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우선 내부미실현손익을 제거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내부미실현손익을 제거한다면 고정자산의 내부미실현손익만을 제거할 것인지 아니면 재고자산과 고정자산의 내부미실현손익을 모두 제거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실증분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미실현손익을 모두 제거하는 경우와 고정자산의 미실현손익만 제거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연결재무제표 주석을 검토한 결과 미실현손익이 어떤 자산과 관련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부미실현손익을 모두 제거하는 경우와 제거하지 않는 경우만을 구분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바. 기타 결정요소

김진수·이준규(2002)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지배회사와 연결자회사간의 사업연도를 통일하도록 강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배회사와 연결자회사간의 회계기준 통일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배회사와 연결자회사의 결산일이 모두 12월말인 법인으로 한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기로 하며, 회계처리방법의 차이 조정에 대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도 수행하지 않기로 한다. 한편 연결납세전 자회사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연결납세제도 적용 이전에 발생한 연결자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연결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연결자회사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고 연결법인세부담액을 추정하기로 한다. 한편 연결세액의 배분기준은 실증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적인 결정사안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실증분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2. 분석유형의 구분

이상에서 검토한 선행연구 및 외국의 연결납세제도를 기초로 우리나라에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결정하여야 주요 요소들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집단에 연결납세와 개별납세의 선택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연결납세를 강제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둘째, 연결범위를 결정짓는 연결자회사에 대한 지주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셋째, 지주비율 기준을 충족하는 연결자회사를 연결납세대상에 강제로 가입시킬 것인지 아니면 연결집단이 연결납세대상 자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넷째, 연결집단내 내부미실현손익을 제거함에 있어서 고정자산의 미실현손익만을 제거할 것인지 아니면 재고자산과 고정자산의 미실현손익을 모두 제거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연결납세제도 도입시 결정하여야 할 요소들을 요약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연결납세제도 도입시 결정요소

결정요소	도입방안
연결납세의 선택적용	선택허용 또는 강제적용
연결자회사의 지주비율	100% 또는 80% 이상
연결자회사의 선택여부	강제포함 또는 선택포함
내부미실현손익의 제거	재고자산과 고정자산의 미실현손익 제거 또는 고정자산의 미실현손익만 제거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각 결정요소별 도입방안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연결납세의 선택권을 연결집단에 부여하는 경우와 연결집단에 대하여 연결납세를 강제하는 경우로 구분한 후, 연결자회사의 지주비율(100% 또는 80% 이상), 연결자회사의 선택여부(강제포함 또는 결손금 발생 자회사만 포함), 그리고 내부미실현손익 제거여부(제

거 또는 미제거)[6]에 따라 다음의 <표 3>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모두 8가지 분석유형을 구분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8가지 분석유형별로 연결법인세부담액을 추정하고 여기에 대응되는 개별법인세부담액의 합계액을 계산하여 연결납세시 세부담 감소액을 추정하고, 차이분석을 수행하기로 한다.

<표 3> 분석유형의 구분

경우	지주비율(소유지분율)	연결자회사의 선택여부	미실현손익 제거여부
A	100%	모든 자회사 포함	제거
B	100%	결손금 발생 자회사만 포함	제거
C	100%	모든 자회사 포함	미제거
D	100%	결손금 발생 자회사만 포함	미제거
E	80% 이상	모든 자회사 포함	제거
F	80% 이상	결손금 발생 자회사만 포함	제거
G	80% 이상	모든 자회사 포함	미제거
H	80% 이상	결손금 발생 자회사만 포함	미제거

3. 연결법인세부담액 추정과 개별법인세부담액 합계의 계산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될 경우 연결집단의 연결법인세부담액과 지배·종속회사의 개별법인세부담액 합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연결납세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한 결정근거를 제시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연결법인세부담액의 추정에 있다.

연결법인세부담액이 개별법인세부담액과 차이를 보이게 되는 직접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연결납세시 세액증감요인

요 인	내 용	증 감
결손금의 통산	연결집단 내 기업간의 결손금 통산으로 인한 효과	−
배당과세 제외	연결집단 내 기업간의 배당에 대한 과세제외 효과	−
내부미실현손익 제거	내부미실현손익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	±
세율누진효과	초과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액증가효과	+
기타요인	세법상 각종 한도의 통산효과 등	±

본 연구에서는 위 세액증감요인 중 결손금의 통산효과, 배당과세 제외효과, 내부미실현손익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 및 세율누진효과[7]를 고려하여 연결법인세부담액을 추정하기로

6) 당초에는 고정자산 미실현손익만을 제거하는 경우와 재고자산과 고정자산의 미실현손익을 모두 제거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연결재무제표 주석에서 미실현손익이 어떤 자산과 관련된 것인지 구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차선책으로 미실현손익을 모두 제거하는 경우와 제거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7) 김진수·이준규(200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초과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액증가효과가 2000년에 45억원(전체

한다. 한편 세법상 각종 한도의 통산효과는 연결집단내 기업의 한도를 통산함에 따라 한도초과액과 한도미달액이 서로 상계되어 세액감소효과를 유발하는 경우(예를 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도 있을 수 있고, 반면에 접대비 한도액과 같이 연결집단 내 손금한도를 일괄하여 계산하는 경우[8] 전체 한도가 축소되어 세액증가효과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세법상 각종 한도의 통산효과에 대해서는 자료수집이 어렵고, 세액증감효과가 혼재되어 전체 연결법인세부담액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법인세부담액을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다만 연결법인세부담액이 0이하의 금액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0으로 한다.[9]

연결법인세부담액 =
(지배회사 과세표준 + 종속회사 과세표준 ± 내부미실현손익 - 수입배당금 차액조정) × 세율

여기에서 지배회사 과세표준 : 지배회사 사업보고서상 과세표준에서 수집
종속회사 과세표준 : 종속회사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에 기초하여 추정[10]
미실현손익 : 연결재무제표 주석에서 수집
수입배당금 차액조정 : 연결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에 대한 차액조정[11]

개별법인세부담액의 합계는 지배회사와 자회사의 개별법인세부담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이때 지배회사 법인세부담액은 재무제표 이연법인세 주석에서 수집하였으며, 자회사는 대부분 이연법인세를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을 법인세부담액으로 하였다.

4. 표본의 선정 및 검증방법

5,169억원의 0.87%), 2001년에 52억원(전체 2,698억원의 1.92%)으로 추정되어 전체 세액증가효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 우리나라는 수입금액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접대비 한도액이 감소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연결집단의 접대비 손금한도액을 일괄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접대비가 대부분 손금불산입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접대비 한도액은 연결집단 내의 각 법인별로 개별계산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9) 본 연구에서는 2002년도만을 대상으로 차이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연결결손금의 이월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결결손금이 발생하여 세부담이 0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연결법인세부담액을 0으로 하였다.

10) 대부분의 종속회사가 이연법인세를 적용하고 있지 않고, 사업보고서도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을 직접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이는 법인세부담액과 동일함)으로부터 역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였다. 이때 법인세비용은 공제감면세액이 차감되어 있을 수 있으나, 이 부분을 파악할 수 없어서 공제감면세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11) 본 연구의 지배회사는 기관투자자 또는 지주회사가 아니며,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80% 이상이므로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 50%를 적용하여 세무조정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지분율이 80% 이상인 자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은 지분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배회사는 수입배당금을 수령하면서 투자주식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한다. 따라서 지배회사의 세무조정시 수입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익금산입(유보) 및 수입배당금 중 50% 해당액에 대하여 익금불산입(기타)으로 세무조정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배회사와 자회사가 연결단일실체라면 이 부분을 연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추가로 수입배당금의 50% 해당액만큼을 익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반영하였다.

2002년 12월 결산 상장기업으로서 2003년 3월 3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지배회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1) 국외자회사만 있는 기업
(2) 8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가 전혀 없는 기업
(3) 자회사 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없는 기업
(4)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

위의 표본선정 요건 (1)은 해외자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입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해외자회사는 연결납세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설정한 것이다. 요건 (2)는 본 연구의 목적이 100% 지분을 소유하는 자회사 및 80% 이상 지분을 소유하는 자회사에 대한 연결납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정하였다. 또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없다면 차이분석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건 (3)을 설정한 것이며, 금융·보험업종은 다른 일반업종과 비교가 곤란하기 때문에 요건 (4)를 설정하였다. 표본기업의 선정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표본기업 선정 결과

연결재무제표 공시 기업(2002년 12월말 상장법인)	281
국외자회사만 있는 기업	(56)
80% 이상 지분 소유 자회사가 없는 기업	(100)
자회사 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없는 기업	(22)
최종 분석대상 기업	103

위의 표본기업 중 제조업이 72개, 건설업이 11개, 도·소매업이 9개, 기타 업종이 11개로 나타났다.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의 표본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업종별 차이분석은 수행하지 않기로 한다.

IV.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량

가. 연결집단의 자회사 현황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한 281개 전체 지배회사 및 103개의 최종 분석대상 지배회사의 자회사 현황은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자회사 현황

(단위 : 개, %)

	최소값	중앙값	최대값	평균
연결재무제표 공시기업 전체(281개)				
국내자회사수	0	1	30	2.52
100% 지분 소유 자회사수	0	0	11	0.47
80% 이상 100% 미만 지분 소유 자회사수	0	0	7	0.46
국내자회사에 대한 소유지분율	0	56.64	100	51.99
국외자회사수	0	1	58	2.53
국외자회사에 대한 소유지분율	0	70.00	100	51.16
최종 분석대상 지배회사(103개)				
국내자회사수	1	3	14	3.70
100% 지분 소유 자회사수	0	1	4	0.90
80% 이상 100% 미만 지분 소유 자회사수	0	1	4	0.89
국내자회사에 대한 소유지분율	3	78.72	100	79.12
국외자회사수	0	1	29	2.12
국외자회사에 대한 소유지분율	0	54.97	100	45.86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한 기업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국내자회사수는 평균 2.52개이며 최대 30개의 국내자회사를 소유한 지배회사도 1개가 있었다. 자회사 지분 100%를 소유한 기업은 평균 0.47개로서 2개 기업 중 약 1개 기업 정도가 자회사 지분 100%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모든 자회사에 대한 지배회사의 평균지분율은 약 52%였다. 한편 국외자회사수는 평균 2.53개로서 국내자회사수의 평균과 유사하였으며, 국외 모든 자회사에 대한 지배회사의 평균지분율은 약 51%로서 국내자회사에 대한 지분율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하는 103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할 때 국내자회사수는 평균 3.70개이며, 자회사 지분 100%를 소유한 기업은 평균 0.90개이고, 국내 모든 자회사에 대한 지배회사의 평균지분율은 약 79%로 나타났다. 한편 국외자회사수는 평균 2.12개이고, 국외 모든 자회사에 대한 지배회사의 평균지분율은 약 46%로서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한 전체기업에 비하여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103개 기업 중 소유지분율 100%의 자회사만 소유하고 있는 지배회사는 41개이고, 80% 이상 100% 미만의 자회사만 소유하고 있는 지배회사는 39개이며, 23개 기업은 100% 자회사 및 80% 이상 100% 미만 자회사를 모두 소유하고 있다. 지배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개수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지배회사 소유 자회사 개수

소유지분율100% / 80%~100% 미만		소유 자회사 개수					계
		0	1	2	3	4	
소유 자회사 개수	0	0	28	7	6	0	41
	1	28	8	5	1	1	43
	2	7	3	0	0	0	10
	3	3	4	0	0	0	7
	4	1	1	0	0	0	2
계		39	44	12	7	1	103

100% 자회사만 소유하는 41개 지배회사 중 1개의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회사가 28개로 가장 많았으며, 2개 및 3개의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회사는 각각 7개 및 6개로 나타났다. 한편 80% 이상 100% 미만 자회사만 소유하는 39개 지배회사 중 1개의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회사가 28개로 가장 많았으며, 2개, 3개 및 4개의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회사는 각각 7개, 3개 및 1개로 나타났다. 23개 지배회사는 100% 자회사 및 80% 이상 100% 미만 자회사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데, 이중 100% 자회사 1개와 80% 이상 100% 미만 자회사 1개를 소유하는 지배회사가 8개로 가장 많았다.

80% 이상 100% 미만 자회사만 소유하는 39개 지배회사 중 자회사 지분을 99%이상 소유하고 있는 지배회사도 14개나 되어, 연결납세대상 기업을 자회사 지분 100%를 소유하는 기업으로 한정할 경우 실질적으로 100% 지배·종속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연결납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배회사의 자회사 소유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지배회사가 3개 내외의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납세제도가 실제 도입되더라도 지배회사의 연결납세 이행상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내부미실현손익의 현황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한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의 현황은 <표 8>과 같다.

<표 8> 내부미실현손익 현황[12]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시기업수	공시금액		
		최소값	최대값	평균
재고자산 미실현손익	33개	-232	513,848	18,024
유형자산 미실현손익	15개	-3,217	30,398	2,248

분석대상 103개 기업 중 36개 기업이 내부미실현손익을 공시하였다. 이중 12개 기업은 재고자산과 유형자산 모두에 대하여 미실현손익을 공시하였다. 재고자산에 대해서 1개 기업이 미실현손실을 공시하였고 나머지 기업은 모두 미실현이익을 공시하였으며, 유형자산에

12) 이는 연결납세대상 기업간의 내부미실현손익 현황이 아니라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간의 전체 내부미실현손익 현황이다.

대해서 2개 기업이 미실현손실을 공시하였고 나머지 기업은 미실현이익을 공시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결기업간에 손실보다는 이익을 가산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내부미실현손익을 공시한 기업 중 12개 기업은 미실현손익이 어떤 자산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구분표시하지 않고 통합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표 8>에서는 통합표시 금액을 모두 재고자산에 대한 미실현손익으로 간주하였다. 미실현손익을 공시한 기업이 전체 기업 중 약 35%에 불과한데 미실현손익이 중요하지 않거나 미실현손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편의상 이를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미실현손익 수준은 <표 8>보다는 많다고 추정된다. 한편 고정자산의 미실현손익 중 감가상각비 등을 통한 실현손익을 각각 총액으로 구분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주석으로 공시한 미실현손익 금액을 미실현손익과 실현손익의 순액으로 간주하였다.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제거해야 할 내부미실현손익을 고정자산 미실현손익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재고자산 미실현손익까지 포함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내부미실현손익은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비록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통합표시된 내부미실현손익을 재고자산의 내부미실현손익으로 간주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고자산의 미실현손익 발생건수 및 금액이 유형자산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납세의 실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고자산의 내부미실현손익을 제거하지 않는 방법으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으나, <표 8>의 재고자산 미실현손익이 고정자산의 미실현손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정자산의 내부미실현손익만을 제거한다는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연결납세제도가 연결회계제도의 정착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려면 재고자산과 고정자산의 내부미실현손익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연결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 현황

연결과세표준 계산시 연결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은 연결단일실체간의 내부거래이므로 이에 대한 세무조정이 반영되어야 한다. 분석대상 지배회사가 연결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 현황은 <표 9>와 같다.

<표 9> 연결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배당금 지급 자회사수	공시금액		
		최소값	최대값	평균
100% 지분소유 자회사	6개	90	3,000	683.67
80% 이상 100% 미만 지분소유 자회사	15개	22.31	19,399.2	2,699.69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한 회계연도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 건수는 6개로서 예상보다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연결집단의 세무조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결법인세부담액과 개별법인세부담액 합계의 비교

제Ⅲ장 연구설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연결납세의 선택권을 연결집단에 부여하는 경우(선택 연결납세신고)와 연결집단에 대하여 연결납세를 강제(강제 연결납세신고)하는 경우로 구분한 후, 연결자회사의 지주비율(100% 또는 80% 이상), 연결자회사의 선택여부(강제포함 또는 결손금 발생 자회사만 포함), 그리고 내부미실현손익 제거여부(제거 또는 미제거)에 따라 구분한 8가지 분석유형별로 연결법인세부담액의 평균과 개별법인세부담액 합계의 평균을 각각 계산하였으며, 계산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연결법인세부담액과 개별법인세부담액 합계

(단위 : 백만원, %)

유 형	강제 연결납세신고			선택 연결납세신고		
	연결법인세 부담액	개별법인세 부담액 합계	개별법인세 대비 연결법인세	연결법인세 부담액	개별법인세 부담액 합계	개별법인세 대비 연결법인세
A	21,740	26,068	83.4	21,033	26,068	80.7
B	21,318	25,650	83.1	20,727	25,650	80.8
C	23,517	26,068	90.2	22,785	26,068	87.4
D	23,050	25,650	89.9	22,433	25,650	87.5
E	23,203	27,865	83.3	22,363	27,865	80.3
F	21,092	25,650	82.2	20,503	25,650	79.9
G	24,982	27,865	89.7	24,117	27,865	86.5
H	22,824	25,650	89.0	22,210	25,650	86.6

(주) 유형에 대한 설명 :

A : 소유지분율 100% 자회사만 포함-결손·비결손 자회사 모두 포함-미실현손익 제거
B : 소유지분율 100% 자회사만 포함-결손 자회사만 포함-미실현손익 제거
C : 소유지분율 100% 자회사만 포함-결손·비결손 자회사 모두 포함-미실현손익 미제거
D : 소유지분율 100% 자회사만 포함-결손 자회사만 포함-미실현손익 미제거
E : 소유지분율 80%이상 자회사 포함-결손·비결손 자회사 모두 포함-미실현손익 제거
F : 소유지분율 80%이상 자회사 포함-결손 자회사만 포함-미실현손익 제거
G : 소유지분율 80%이상 자회사 포함-결손·비결손 자회사 모두 포함-미실현손익 미제거
H : 소유지분율 80%이상 자회사 포함-결손 자회사만 포함-미실현손익 미제거

가. 연결납세의 선택적용

위 <표 10>의 결과에 의하면 강제 연결납세신고의 경우 8가지 유형별로 연결법인세부담액이 개별법인세부담액 합계의 약 82%에서 90% 수준으로 평균 86.3%이며, 선택 연결납세신고의 경우에는 약 80%에서 87% 수준으로 평균 83.7%로 나타났다. 또한 강제 연결납세신고와 선택 연결납세신고간의 연결법인세부담액과 개별법인세부담액 합계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8가지 유형 모두 강제 연결납세신고 보다 선택 연결납세신고의 경우가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강제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것보다 선택 연결납세신고를 하면 연결법

인세부담액을 더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연결집단은 연결납세를 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연결납세를 선택할 것이므로 이러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결법인세부담액이 개별법인세부담액의 합계보다 적은 것은 주로 결손금의 통산효과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연결납세의 선택적용을 허용한다면 상당한 세수감소가 예상되므로 세수감소분을 메울 수 있는 대체적인 세원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표 10>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강제 연결납세신고와 선택 연결납세신고의 경우 연결납세를 함으로써 연결집단별로 평균법인세부담액이 각각 36억원 및 43억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과세당국이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연결집단에 대하여 약 2% 정도의 부가세(surtax)를 과세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볼 때 2%의 부가세를 과세하더라도 일시적인 세수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결손금의 통산효과는 엄밀한 의미에서 과세이연(단, 결손법인이 5년 내에 결손금을 공제할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세액감소에 해당함)에 해당하므로 세수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해 과다하게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은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만일 부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연결납세 적용 초기에 2년 내지 3년 정도만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13]

나. 연결자회사의 지주비율

강제 연결납세신고의 경우와 선택 연결납세신고의 경우 모두 연결납세대상을 소유지분 100% 자회사만으로 한정하는 경우보다 80% 이상 자회사로 확대하는 경우 개별법인세 대비 연결법인세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E, B>F, C>G, D>H). 그러나 연결범위를 지분비율 80% 이상 자회사로 확대하더라도 개별법인세 대비 연결법인세 비율이 1%P 이내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세당국이 예상하는 것과는 달리 중요한 세수감소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연결자회사의 선택여부

연결법인세부담액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강제 연결납세신고와 선택 연결납세신고 모두 결손금이 발생한 자회사만 포함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연결법인세부담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A>B, C>D, E>F, G>H). 그러나 연결집단에 대하여 연결자회사의 선택을 허용하더라도 연결자회사를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해 개별법인세 대비 연결법인세 비율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내부미실현손익의 제거

연결법인세부담액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강제 연결납세신고와 선택 연결납세신고 모두 내부미실현손익을 과세이연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연결법인세부담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A<C, B<D, E<G, F<H). 한편 개별법인세 대비 연결법인세 비율은 내

13) 이 경우 연결납세 적용 초기란 연결납세제도의 시행연도(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연결납세제도를 시행하는 연도를 의미함)부터 2년 내지 3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연결집단별로 연결납세를 선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2년 내지 3년간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연결납세제도의 시행연도부터 일정기간 동안만 부가세를 부과한다면 그 기간 내에는 연결납세를 선택하지 않다가 부가세 부과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연결납세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미실현손익을 과세이연한 경우 7%P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결재무제표 주석상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간의 내부미실현손익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실제 연결납세 대상 기업간의 내부미실현손익만을 제거한다면 연결법인세 감소효과가 7%P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분석한 이유는 연결재무제표 주석에는 내부미실현손익이 발생한 기업들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연결납세 대상 기업간의 내부미실현손익을 계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부미실현손익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도 내부미실현손익의 제거효과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차이분석 결과

앞서 비교한 8가지 유형별 연결법인세부담액과 개별법인세부담액 합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차이분석을 수행하였다. 차이분석 결과는 <표 11>에 요약되어 있다.

<표 11> 차이분석 결과

(단위: 백만원)

유형	강제 연결납세신고		선택 연결납세신고	
	차이 평균	t 값	차이 평균	t 값
A	-4,328	-2.705**	-5,035	-3.218**
B	-4,332	-2.731**	-4,923	-3.163**
C	-2,551	-1.923	-3,283	-2.545*
D	-2,600	-1.974	-3,217	-2.498*
E	-4,662	-2.792**	-5,502	-3.404**
F	-4,558	-2.869**	-5,147	-3.304**
G	-2,883	-2.145*	-3,748	-2.911**
H	-2,826	-2.138*	-3,440	-2.663**

(주) 유의수준 : ** < 1%, * < 5%

유형에 대한 설명 :

A : 소유지분율 100% 자회사만 포함-결손·비결손 자회사 모두 포함-미실현손익 제거

B : 소유지분율 100% 자회사만 포함-결손 자회사만 포함-미실현손익 제거

C : 소유지분율 100% 자회사만 포함-결손·비결손 자회사 모두 포함-미실현손익 미제거

D : 소유지분율 100% 자회사만 포함-결손 자회사만 포함-미실현손익 미제거

E : 소유지분율 80%이상 자회사 포함-결손·비결손 자회사 모두 포함-미실현손익 제거

F : 소유지분율 80%이상 자회사 포함-결손 자회사만 포함-미실현손익 제거

G : 소유지분율 80%이상 자회사 포함-결손·비결손 자회사 모두 포함-미실현손익 미제거

H : 소유지분율 80%이상 자회사 포함-결손 자회사만 포함-미실현손익 미제거

강제 연결납세신고를 채택하는 경우 연결납세대상을 100% 지분을 소유하는 자회사로 한정하는 경우와 80% 이상 지분을 소유하는 자회사로 확대하는 경우 모두 연결법인세부담액이 개별법인세부담액 합계보다 평균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연결법인세부담액과 개별법인

세부담액 합계의 차이에 대한 차이분석 결과를 보면 자회사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100%이고 내부미실현손익을 제거하지 않은 경우(유형 C 및 D)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선택 연결납세신고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대상을 100% 지분을 소유하는 자회사로 한정하는 경우와 80% 이상 지분을 소유하는 자회사로 확대하는 경우, 모든 자회사를 연결납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와 결손금이 발생한 자회사만 포함시키는 경우, 그리고 내부미실현손익을 제거하는 경우와 제거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한 8가지 유형 모두 연결법인세부담액과 개별법인세부담액의 합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강제 연결납세제도, 지주비율 100%, 내부미실현손익의 미제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유형에서 연결법인세부담액이 개별법인세부담액의 합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 <표 11>의 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연결납세대상 범위를 100% 지분소유 자회사로 한정하는 경우에 비해 80% 이상 지분소유 자회사로 확대할 경우 연결법인세부담액이 더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A>E, B>F, C>G, D>H), 이는 결손금이 발생한 자회사가 다수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연결납세대상 범위를 달리하였을 때 연결법인세부담액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추가로 분석하기 위해서 차이분석을 다시 수행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12>에 요약되어 있다.

<표 12> 연결납세대상 범위에 따른 연결법인세부담액 차이분석

(단위: 백만원)

차이 유형	강제 연결납세신고		선택 연결납세신고	
	차이평균	t 값	차이평균	t 값
A-E	334	1.487	468	3.425**
B-F	226	2.064*	223	2.041*
C-G	332	1.478	466	3.410**
D-H	226	2.064*	223	2.041*

(주) 유의수준 : ** < 1%, * <5%

유형에 대한 설명 :

A : 소유지분율 100% 자회사만 포함-결손·비결손 자회사 모두 포함-미실현손익 제거
B : 소유지분율 100% 자회사만 포함-결손 자회사만 포함-미실현손익 제거
C : 소유지분율 100% 자회사만 포함-결손·비결손 자회사 모두 포함-미실현손익 미제거
D : 소유지분율 100% 자회사만 포함-결손 자회사만 포함-미실현손익 미제거
E : 소유지분율 80%이상 자회사 포함-결손·비결손 자회사 모두 포함-미실현손익 제거
F : 소유지분율 80%이상 자회사 포함-결손 자회사만 포함-미실현손익 제거
G : 소유지분율 80%이상 자회사 포함-결손·비결손 자회사 모두 포함-미실현손익 미제거
H : 소유지분율 80%이상 자회사 포함-결손 자회사만 포함-미실현손익 미제거

<표 12>의 차이분석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제 연결납세신고 하에서는 결손금 발생 자회사만 포함하였을 때(B-F 및 D-H) 연결납세대상 범위를 100% 지분소유 자회사로 한정하는 경우보다 80% 이상 지분소유 자회사로 확대하는 경우 유의하게 연결법인세부담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택 연결납세신고 하에서는 모든 유형에서 연결납세

대상 범위를 100% 지분소유 자회사로 한정하는 경우보다 80% 이상 지분소유 자회사로 확대하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결법인세부담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연결범위를 80% 이상 자회사로 확대하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세부담 감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앞서 <표 10>의 분석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세부담 감소효과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과세당국에서 연결자회사에 대한 지주비율을 결정할 때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연결납세시 연결집단의 연결법인세부담액과 개별납세시 지배·종속회사의 법인세부담액 합계간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연결납세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납세제도 도입시 결정하여야 할 요소들을 도출하고 각 도입방안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연결납세의 선택권을 연결집단에 부여하는 경우와 연결집단에 대하여 연결납세를 강제하는 경우로 구분한 후, 연결자회사의 지주비율(100% 또는 80% 이상), 연결자회사의 선택여부(강제포함 또는 결손금 발생 기업만 포함), 그리고 내부미실현손익 제거여부(제거 또는 미제거)에 따라 모두 8가지 분석유형을 구분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8가지 분석유형별로 연결법인세부담액을 추정하고 여기에 대응되는 개별법인세부담액의 합계액을 계산하여 연결납세시 세부담 감소액을 추정하고 차이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법인세부담액은 개별법인세부담액의 합계보다 적게 나타났는데, 연결집단이 연결납세를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연결법인세부담액은 개별법인세부담액 합계의 약 84% 수준으로 연결집단별로 약 43억원의 법인세부담액 감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과세당국이 고려하고 있는 2% 정도의 부가세(surtax)를 부과하더라도 연결집단별로 38억원 이상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둘째, 연결법인세부담액과 개별법인세부담액 합계간의 차이분석 결과 강제 연결납세신고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자회사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100% 이상이고 내부미실현손익을 제거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선택 연결납세신고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범위, 결손금 발생 자회사의 선택 여부 및 내부미실현손익 제거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연결법인세부담액이 개별법인세부담액 합계보다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결납세대상을 100% 지분소유 자회사로 한정하는 경우에 비해 80% 이상 지분소유 자회사로 확대하는 경우 연결법인세부담액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각 요소별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집단에 대하여 연결납세와 개별납세를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연결납세를 강제하는 경우에 비하여 연결법인세부담액이 상대적으로 더 감소(개별법인세 대비 연결법인세 비율을 기준으로 약 3%P 정도 낮게 나타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세당국에서 연결납세와 개별납세의 선택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가 될 것이다.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국내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인 만큼 추가적인 세수감소를 감수하더라도 연결납세의 선택권한을 연결집단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연결납세제도가 단순한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본의 경우처럼 연결납세의 승인권한을 국세청에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결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을 100%로 한정하는 경우에 비해 연결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을 8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 연결법인세부담액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결범위를 지분비율 80% 이상 자회사로 확대하더라도 개별법인세 대비 연결법인세 비율이 1%P 이내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세당국이 예상하는 것과는 달리 중요한 세수감소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과세당국에서 단순히 세수감소를 우려하여 지주비율 100%기준을 내부방침으로 정한 것이라면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참고로 지주비율의 수준을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연결법인세부담액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연결자회사의 연결납세대상 가입을 강제하는 경우에 비하여 연결납세 자회사를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경우의 연결법인세부담액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주비율을 100% 또는 80%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 연결납세대상 자회사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연결범위의 조절을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결자회사의 연결납세대상 가입을 강제하여야 한다는 기존 연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연결납세대상 자회사를 연결집단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일단 연결납세대상에 포함된 자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적으로 연결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연결법인세부담액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내부미실현손익을 과세이연한 경우의 개별법인세 대비 연결법인세 비율이 약 7%P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연결재무제표 주석상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간의 내부미실현손익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실제 연결납세 대상 기업간의 내부미실현손익만을 제거한다면 연결법인세부담액의 감소효과가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자회사에 대한 지주비율을 100% 또는 80% 이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대상 자회사의 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연결납세의 단순화를 위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내부미실현손익만을 제거하자는 기존 연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고정자산의 내부미실현손익만을 제거하는 것보다는 과세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연결납세제도가 연결회계제도의 정착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고자산과 고정자산의 내부미실현손익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실제 공시자료에 기초하여 채택 가능한 8가지 유형별로 연결세무조정을 반영한 연결법인세부담액을 추정하고, 개별법인세부담액의 합계와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다만 종속회사에 대한 실증분석 자료를 일일이 수작업에 의하여 수집하여야 한다는 어려움으로 인해 실증분석대상 기간을 2002년으로 국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론을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연결자회사의 과세표준을 법인세비용으로부터 역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측정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미실현손익을 공시한 기업 중 상당수가 재고자산 미실현손익과 고정자산 미실현손익을 구분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재고자산의 미실현손익으로 구분하였으며, 고정자산의 미실현손익 중 감가상각비 등을 통한 실현손익도 주석에서 구분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시한 금액이 미실현손익과 실현손익의 순액으로 간주한 점도 본 논문의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비록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보다 세밀한 분석은 실시할 수

없었으나, 내부미실현손익의 제거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일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연결납세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지배회사가 연결자회사의 범위를 결정할 때 고려할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연결법인세부담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결손금의 통산효과만을 고려하여 연결납세대상 자회사의 선택기준으로 자회사의 결손금 발생 여부만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고려하여 본 논문의 결과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연결재무제표준칙에서는 지분율 기준 이외에 실질지배력 기준에 의해 연결종속회사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연결납세 대상 자회사는 결국 지분율 기준만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질적 의미의 연결납세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제시한 본 연구의 한계점은 향후 후속 연구에서 개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김광윤, 2002, "기업집단에 대한 연결납세신고제도의 도입구조 비교연구", 「세무학연구」,제19권 제2호. pp.35-59.

김문현·김란영, 2000, "연결납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연구원 연구보고서 00-05」.

김종철, 2003,「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 연구」, 영화회계법인.

김종철·오윤택, 2001,「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 연구」, 영화회계법인.

김진수, 2002, "일본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내용과 시사점", 「재정포럼」, 4월호. pp. 46-66.

김진수·이준규, 2002,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정책보고서 02-01」.

김찬섭, 1999, "연결납세제도의 도입구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윤택·정규언, 2001,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와 도입방안",「회계와감사연구」, 제37호. pp.53-86.

이광재, 2002,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에 관한 연구",「경영학연구」,제31권 제5호. pp. 1211-1228.

이우택, 2000,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과 정책과제", 한국공인회계사회 심포지움자료.

_____, 2001, "우리나라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과 실행가능성에 관한 연구",「세무학연구」,제17호. pp.69-128.

이준규, 2003,「미국의 연결납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정재연, 2003,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의 비교",「산업과 경제」, 제13집 통권 제22호. pp.145-167.

주요식, 1997,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기호, 2001, "연결납세제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실증 연구",「회계정보연구」,제16권. pp.189-206.

剛崎和雄·望月光南, 2000,「日米對比 連結納稅の ポイント」, ぎょうせい.

稅制調査會, 2001,「連結納稅制度の基本的考え方」.

租稅研究協會, 2002,「日本型連結納稅制度について」.

Collins, Bryan P. and Matthew R. Shafer, 1999, "Consolidated charitable deductions", *The Tax Adviser v.30 no.11* : 763-764

Crestol, Jack, Kevin M. Hennessey and Richard F. Yates, 1998, *The Consolidated Tax Return*, Warren, Gorham & Lament.

Friedel, David and Amy Hack, 1999, "When are the final consolidated E&P regulations retroactive?", *The Tax Adviser v.30 no. 7* : 469-470

Lerner, Herbert J. and Richard S. Antes, 2000, *Federal Income Taxation of Corporations Filing Consolidated Returns*, Matthew & Company, Inc.

ABSTRACT

Jae-Yeon Jeong*, Hyun-Geol Shin**

This study examines empirically the significant changes in tax payments when the consolidated tax return is introduced in the future. We estimate the consolidated tax payments under the eight cases which are classified as such : whether only 100% ownership subsidiaries should be included or 80% and over, whether all subsidiaries should be included or only subsidiaries with loss, and whether unrealized profits from intercompany transactions should be excluded or not. After estimating the consolidated tax payments, we test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solidated tax payments and the sum of the individual tax payments of the subsidiaries.

The results of the test show that the consolidated tax payments are significantly less than the sum of the individual tax payments of the subsidiaries. We interpret that the inclusion of the losses of the subsidiaries in the consolidated tax base makes the tax payment decrease. Based on our analysis about 3.8 billion Won per each parent company would decrease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consolidated tax return.

And we find that under the mandatory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onsolidated and individual tax payment exists except that the only 100% ownership subsidiaries are included and unrealized profits from intercompany transactions are not excluded. However, when the parent companies have the discretion to select the consolidated subsidiaries, the consolidated tax payments are significantly less than the sum of the individual tax payments of the subsidiaries regardless of the ownership percentage, inclusion of the loss of the subsidiaries and exclusion of the unrealized profits.

Key words : the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tax payments, ownership, surtax, unrealized profits from intercompany transactions

---

* **Instructor, Division of Business, Tourism, and Account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